

간병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구비서류

1. 사업장 확인서 (소정 서식) 1부

간병의 사유로 휴직, 혹은 대체업무, 근로시간의 변경 등이 불가함을 입증 (인사규정 첨부)

2. 간병 대상자에 대한 진단서-최소 30일 이상

질병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함 또는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함을 입증

3. 본인(수급자격인정신청자)만이 간병을 해야 함을 입증할 각종 서류

- 간병 대상자 가족관계 증명서
- 본인(수급자격인정신청자)을 제외한 나머지가족원들의 재직 증명서
-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
- 가족원들의 주민등록등본
- 퇴직사유 확인서 (근로자용)
- 기타 본인만이 간병을 해야 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

4. 실업급여신청 시 -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할 서류

(더 이상 본인이 간병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의미함)

- 질병이 완치, 혹은 호전되어 간병 대상자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게 됐음을 입증하는 진단서 (소견서)
- 요양원을 통한 간병, 혹은 개별 간병인을 고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(요양원 입원확인서 또는 간병확인서)
-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원이 간병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입증 서류 (예: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어 간병을 하게 된 경우 퇴사증명서 등)

※ 1~3번까지의 서류는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이며, 4번의 서류는 실업급여수급 신청 시 구직활동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.

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(사업주용)

귀사에서 퇴사한 근로자 ()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여 고용보험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요청하오니,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직 근로자	성 명		생 년 월 일	
	주 소	(☎)		
	이직당시 근무부서			
확 인 내 용 (해당사항에 √ 표시)				
1. 상기인의 업무 내용 (구체적으로)				
2. 상기인이 평소 간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			<input type="checkbox"/> 있다. · 시 기 : · 내 용 :	<input type="checkbox"/> 없다.
3. 상기인의 간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의 수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 여부			<input type="checkbox"/> 가능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불가능함	
4. 상기인을 간병과 관련하여 업무가 가능한 부서로 전환배치 할 수 있었는지 여부			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환배치 가능(부서명 및 업무) →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환배치 불가능	
5. 상기인이 간병과 관련 직무전환 배치 또는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			<input type="checkbox"/> 있다(부서명 및 업무) : <input type="checkbox"/> 없다	
6. 회사 규정상 상기인에게 퇴사 대신 간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(인사 규정 첨부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여할 수 있다. (가능 기간 :)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여 불가능 (이유 :)	
7. 기타 상기인의 이직과 관련된 참고사항				

2019. . .

위의 사실을 확인 합니다.

회 사 명 :
 소 속 :
 직 위 :
 이 름 : (서명 또는 인)
 사업주명 : (직인)

※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16조, 제118조에 의거,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간병 확인서

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인 이름 :

생년월일 :

연락처 :

주 소 :

위 수급자격 신청인 ()의 가족(가족 관계 :)을
본인 (간병인 :) 은 년 월 일부터
간병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위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
있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자(간병인) 이름 :

생년월일 :

연락처 :

주 소 :

2019년 월 일

※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16조, 제118조에 의거,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